

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 감독규정 <별표 6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호모목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 등”으로, “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”를 “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장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”를 각각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단서 중 “전세사기피해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장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6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1.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로. (생략)</p> <p>모. "전세사기 피해자" 이라 함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.</p> <p>보. (생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</p> <p>5. ~ 19. (생략)</p> <p>20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</p>	<p><별표 6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로. (현행과 같음)</p> <p>모. ----- "피해자 등" ----- ----- ----- 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보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</p> <p>-----</p> <p>5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(----- ----- ----- "전세사기 피해자 등"에 -----</p>

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.(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.)

가.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%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, 경·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.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(DTI)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

다.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

--.)

가.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

나. -----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--

다. -----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--

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상호금융업 감독규정 <별표 2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호모목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 등”으로, “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”를 “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장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”를 각각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단서 중 “전세사기피해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2>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1.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로. (생 략)</p> <p>모. "전세사기 <u>피해자</u>" 이라 함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<u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</u>의 심의·의결을 거쳐 <u>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</u>을 의미한다.</p> <p>보. (생 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</p> <p>5. ~ 19. (생 략)</p> <p>20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<u>전세사기 피해자</u>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</p>	<p><별표 2>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로. (현행과 같음)</p> <p>모. ----- <u>피해자 등</u>"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호 가목,</u> <u>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</u> <u>한다.</u></p> <p>보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</p> <p>-----</p> <p>5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(----- ----- ----- ----- "<u>전세사기 피해자</u> <u>등</u>"에 -----</p>

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.(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.)

가.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%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, 경·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.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(DTI)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

다.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

--.)

가.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

나. -----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--

다. ----- 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-----

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보험업 감독규정 <별표 21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호모목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 등”으로, “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”를 “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장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”를 각각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단서 중 “전세사기피해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21>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(제7-5조의 2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1.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로. (생 략)</p> <p>모. "전세사기 <u>피해자</u>" 이라 함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<u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</u>의 <u>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</u>을 의미한다.</p> <p>보. (생 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</p> <p>5. ~ 19. (생 략)</p> <p>20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<u>전세사기 피해자</u>에</p>	<p><별표 21>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(제7-5조의 2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로. (현행과 같음)</p> <p>모. ----- <u>피해자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보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</p> <p>-----</p> <p>5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(----- ----- ----- ----- <u>“전세사기 피해자</u></p>

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<별표 5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호모목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 등”으로, “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”를 “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장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”를 각각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단서 중 “전세사기피해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5>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</p> <p>1.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로. (생 략)</p> <p>모. "전세사기 <u>피해자</u>" 이라 함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<u>제3호에</u> 따른 <u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</u>의 <u>심의·의결을</u> 거쳐 <u>국토부장관이</u>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.</p> <p>보. (생 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</p> <p>5. ~ 19. (생 략)</p> <p>20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<u>전세사기 피해자에</u>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</p>	<p><별표 5>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로. (현행과 같음)</p> <p>모. ----- <u>피해자 등</u> ----- ----- ----- <u>제4호</u> 가목, <u>다목에</u>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보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</p> <p>-----</p> <p>5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 <p>20. (----- ----- ----- ----- "전세사기 <u>피해자</u> <u>등</u>"에 -----</p>

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<별표 3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1호보목 중 “피해자”를 “피해자 등”으로, “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의미한다”를 “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한다.

제5장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에”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“전세사기 피해자”를 각각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목 단서 중 “전세사기피해자”를 ““전세사기 피해자 등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<별표 3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(제11조의2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총 칙</p> <p>1. 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~ 모. (생략)</p> <p>보. "전세사기 <u>피해자</u>" 이라 함은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<u>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</u>의 <u>심의·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</u>을 의미한다.</p> <p>소. (생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</p> <p>5. ~ 20. (생략)</p> <p>21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<u>전세사기 피해자</u>에</p>	<p><별표 3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기준(제11조의2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--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모. (현행과 같음)</p> <p>보. ----- <u>피해자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4호 가목,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소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</p> <p>-----</p> <p>5. ~ 20. (현행과 같음)</p> <p>21. (----- ----- ----- ----- <u>“전세사기 피해자</u></p>

